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5. 11.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1일, 윤건영의원 등 4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7.)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08.) 상정·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26.)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
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건영 의원)

1923년 일본의 간토(關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은폐, 역사의 왜곡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 동포에 대한 혐오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사건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해방 후 수립된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으며, 2013년 피해자 명부의 발견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조사나 무고하게 대학살된 조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1)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1923년 일본 간토(關東)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군인·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조선인들이 학살된 사건(이하 “간토 대학살 사건”이라 함)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본칙 30개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간토 대학살사건을 “1923년 일본의 간토(關東)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인·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조선인들 6천여 명이 학살된 사건”으로 정의함.

둘째,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시적 조사활동기간(4년, 2년 연장 가능)를 가진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

셋째,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넷째, 위원회로 하여금 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관한 정기보고서(매년 1회)와 종합보고서(종료 후 6개월 이내)를 작성하

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다섯째,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 추도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도공간의 조성 등 명예회복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1조	목적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제2조	정의	간토대학살, 피해자, 유족 정의
	제3조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제4조	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인
	제5조	위원회 활동기간	4년 /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제6조	소위원회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	위원 결격사유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의사의 공개	
	제13조	사무국의 설치	
	제14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15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6조	위원회 운영 등	
	제17조	진상규명 신청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18조	신청 방식	문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
	제19조	신청 각하	
	제20조	진상규명 조사개시	
	제21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2조	결정 등	
	제2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구분	조문 내용		비고
	제24조	보고서 작성	매년 1회 조사보고서 작성 후 국무총리·국회에 보고
	제25조	명예회복사업 등 지원	추도공간 조성, 역사관 건립 등
	제26조	공무원 파견 등	
	제27조	비밀준수 의무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9조	벌칙	비밀 누설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
	제2조	준비행위	위원회 설립준비는 이법 시행일 전에 가능
	제3조	위원 임기 개시 적용례	

2) 총괄적 검토

간토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일본 간토(關東) 지역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10만 5천여 명의 사망·행방불명자 등 19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당시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음.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시행하였고 9월 1일 오후 1시경부터 일본인 사이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른다”, “조선인들이 분필로 표시를 하여 폭탄을 던지도록 하였다”, “조선인들이 폭탄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군경이 날조한 유언비어가 급속하게 퍼져 자경단과 군경에 의해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당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발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1923.11.28.)은 학살된 조선인의 수를 6,661명으로 보도하였으며, 당시 일본을 여행 중이던 독일인이 본국에 돌아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살해당한 조선인의 수가 2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음.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의 이전 과정에서 1953년 이승만 정부에서 작성한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가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이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시행한 연구¹⁾는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와 그 외 문헌자료 등을 통해 총 408명의 명단을 확인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위의 활동은 연구 차원의 활동으로, 간토 대학살사건 조사와

1) 하종문,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관한 실태조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관련한 공식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진상조사가 실시되거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는 상황으로,

제정안과 같이 공식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유족 등의 신청 및 직권조사 결정에 따라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개개인의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함과 동시에,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위령사업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라 구성되는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자료조사 및 실지조사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목적 및 정의규정,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진상규명 조사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신설 대신 진실화해위원회 등 현행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매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발생일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재일민단 주최 추념식을 주일대사관 후원 하에 개최하고 있으며, 주일대사가 참석하여 추념식을 낭독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뜻을 표해오고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 유기홍의원 등 103인이 2014년 4월에 ‘관

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안한 바 있고, 제21대 국회에서 유기홍의원 등 100인이 202
3년 3월에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각각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23년 간토(關東)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토 대학살사건”이란 1923년 일본의 간토(關東)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인·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조선인들 6천여 명이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간토 대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간토 대학살사건”을 ‘1923년 일본의 간토(關東)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인·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조선인들 6천여 명이 학살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행적으로 간토 대학살보다는 관동 대학살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함에도 제명과 정의규정에서는 “간토 대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래어표기법([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2017. 3. 28.))에 따라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일본식 표기나 한국 한자음 둘다 허용되나,²⁾ 일본식 표기를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한편, 상해에서 발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기사에 기재된 6천여명³⁾이 당시 조선인 피해규모로 알려졌으나,⁴⁾ 개정안에 따라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하기 보다는 “조선인들이 ‘대규모’ 학살된 사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안 제2조는 “피해자”와 “유족”을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안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⁵⁾에서는 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 및 유족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피해자와 유족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개별 과거사법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아닌 희생자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⁶⁾

2) 외래어표기법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東京 도쿄, 동경京都 교토, 경도上海 상하이, 상해臺灣 타이완, 대만黃河 황허, 황하

3) 『독립신문』 (1923.11.28.)에 실린 조선인 피살자의 수는 6,661명임.

4) 하중문.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관한 실태조사」. 진실화해위원회. 2022

5) 정의규정 및 제22조(결정 등)에 따르면 신청 및 진상조사를 거쳐 피해자 및 유족이 결정되는데, 제17조제1항은 피해자나 유족 등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각 조항이 논리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다른 과거사법도 피해자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나.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활동기간 등

제3조(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①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피해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에 관한 사항
7. 추도공간 및 역사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활동가 또는 간토 대학살사건 연구자 등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나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

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의 연장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 또는 해촉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간토 대학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간토 대학살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상임 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3조),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그 기간 동안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제5조)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제9조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 일본 정부가 보유하였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의 수집 등 정부 차원의 교섭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회 구성에 정부측 위원을 둘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제 관련 진상규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별도의 추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을 둘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임.

[위원회 위원 구성 입법례]

위원회	위원 구성	근거	비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위원 11명 이내 －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일제 관련 진상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 위원 11명 (대통령 임명) － 4명 : 별도 추천 없이 임명 － 4명 : 국회가 선출하는 자 － 3명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일제 관련 진상조사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 위원 9명 － 국회 추천 9명을 대통령이 임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 위원 9명 － 국회 추천 9명을 대통령이 임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피해자의 유해 발굴 등과 관련해서는, 동 제정안에 피해자 유해 발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원직에서 해임·해촉할 수 있는 사유인 제8조 제2항 각 호에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사무국 직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7)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한 안 제13조제3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 진상규명 신청 및 신청 각하사유 등

제17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접수처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정안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비롯한 접수처를 설치하게 하고 있으며(안 제17조제3항),

그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안 제17조제2항),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9조).

유족이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접수처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진상규명 신청기간(2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4년)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100여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임.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진상규명 조사개시 및 조사방법 등

제20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토 대학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정보의 조회,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4.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유족은 제외한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유해의 제출 요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간토 대학살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

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해당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집한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관리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제정안은 유족 등의 진상규명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안 제20조제1항), 간토 대학 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제3항).

진상규명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간토 대학살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이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1조제5항).

안 제2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위원회가 일본현지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우리정부를 통하여 일본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협조가 필요함.

또한, 안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안 제21조제2항), 실시조사를 실시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자료의 열람·제공 및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21조제4항),

위원회가 위원 또는 직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원회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과 위원회의 결정절차를 거쳐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⁹⁾

이러한 절차적 통제 장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실시조사를 실시하는 위원이나 직원이 필요에 의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¹⁰⁾

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으나, 상기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사의 방법) ①~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실시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시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⑬ (생략)

마. 진상규명 등 결정

제22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의 신청에 따라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간토 대학살사건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유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진상규명 신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완료한 경우 피해 여부, 피해의 원인·배경, 피해자 및 유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2조), 정기보고서(연 1회)와 종합보고서(활동종료 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4조).

안 제24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국무총리에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결과를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¹¹⁾

바. 명예회복사업 및 벌칙 등

제25조(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도비 건립 및 추도시설 등 추도공간 조성 관련 사업
2. 간토 대학살사건 관련 사료관 및 역사관 건립과 운영 및 온라인 아카이브 제작과 관련한 사업
3.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역사왜곡의 시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4.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역사를 통한 평화교류 증진과 관련한 사업

제27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 감정인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실시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11) 안 제5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사실과 안 제22조는 피해진상조사 등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역사관 건립·운영, 역사왜곡의 시정 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5조),

위원회 위원 및 직원, 감정인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문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안 제27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음(안 제29조).

안 제29조의 업무상 비밀 누설 시 부과되는 형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과 그 외 유사 입법례¹²⁾를 고려했을 때 적당한 수준으로 보이나, 안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정보·문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벌칙) ①~③ (생략)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벌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안 제30조는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와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와 실지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규정될 필요성이 있음.

사. 비용추계

제정안에 첨부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총 6년 6개월¹³⁾) 동안 총 49억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위원회 설치, 자문기구 설치 및 종합보고서 작성 소요에 대해서만 추산한 것으로,

재정수반요인 중 사무국의 설치(안 제13조), 진상규명 조사개시 및 진상규명 조사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안 제25조) 등에 대한 재정소요는 산출불가 등의 사유로 추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가재정소요: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3조~제6조)	668	665	675	687	699	711	311	4,417	631
자문기구의 설치 (안 제14조)	64	64	64	64	64	64	-	384	55
종합보고서의 작성 (안 제24조)	-	-	-	-	-	-	140	140	20
추가재정소요	732	729	739	751	763	775	451	4,941	706

주 1.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32년은 6월까지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13) 안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함. 그리고 안 제24조제2항은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1소위원장 윤건영)

제명·목적 등의 “간토 대학살사건”이라는 용어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변경하여 사건을 객관적·중립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유사 과거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피해자”라는 표현을 “희생자”로 수정하며, 동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시 제주4·3사건위원회 및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구성, 진상규명 조사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도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진상규명 조사방법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제명·목적 등의 “간토 대학살사건”이라는 용어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변경하여 사건을 객관적·중립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유사 과거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피해자”라는 표현을 “희생자”로 수정하며, 동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시 제주4·3사건위원회 및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구성, 진상규명 조사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간토 대학살사건”이라는 용어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라는 표현을 “희생자”로 변경함(제명 및 안 제1조 등).

나. 유사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5명과 동 사건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소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13조 및 제15조 삭제).

라. 유해 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의 어려움과 한계를 고려하고, 여순 10·19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동 사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8조).

마. 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에 대해 매년 1회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작성하는 종합보고서를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함(안 제21조).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를 “희생자”로 한다.

안 제1조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를 “희생자”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간토(關東)”를 “간토”로, “조선인들 6천여 명이 학살된”을 “조선인들이 희생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해자”를 “희생자”로,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를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피해자”를 “희생자”로, “존속·비속”을 “비속”으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을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에서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를 “희생자”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학살사건”을 각각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 중 “피해자”를 각각 “희생자”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5명

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 나목에 따른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4년”을 “3년”으로,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하며, 안 제6조(중전의 안 제7조)제2항 중 “상임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안 제8조)제3항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안 제9조(중전의 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항”으로 한다.

① 위원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안 제10조(중전의 안 제11조) 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해당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11조(중전의 안 제12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같은 조 단서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안 제12조로 하며, 안 제12조(중전의 안 제14조)제2항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대학살 진상규명”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다.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까지를 각각 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까지로 하며, 안 제14조(중전의 안 제17조)제1항 중 “피해자”를 “희생자”로 하고, 같은 조 (중전의 안 제17조)제4항 중 “범

위는”을 “범위 및 접수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안 제15조(종전의 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7조(종전의 안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한다.

안 제18조(종전의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정보의 조회,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장은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로부터 제1항제1호·제3호에 따라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19조(중전의 안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자”를 “희생자”로 한다.

안 제20조(중전의 안 제23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6조”로, “제20조”를 “제17조”로, “제22조”를 “제19조”로, “제17조”를 “제14조”로,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제21조(중전의 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와”를 각각 “대통령과”로 한다.

안 제22조(중전의 안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살사건의 피해자”를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운영 및 온라인 아카이브 제작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학살사건”을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역사왜곡의 시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을 “문화·학술 및 교육·연구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의 역사를 통한 평화교류 증진과 관련한”을 “그 밖의 관련”으로 한다.

안 제26조를 삭제하고,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까지를 각각 안 제23

조부터 안 제25조까지로 하며, 안 제23조(중전의 안 제27조) 중 “직원, 감정인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직원”으로 한다.

안 제25조(중전의 안 제29조) 중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제23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으로 한다.

안 제30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위촉, 사무국의 설치 등”을 “위촉 등”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간토 <u>대학살사건</u> 진상규명 및 <u>피해자</u>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간토 <u>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u> 진상규명 및 <u>희생자</u>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23년 간토 (關東) <u>대학살사건</u> 의 진상과 책 임을 규명하여 <u>피해자</u> 의 명예 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 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 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u>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u> --- ----- <u>희생자</u>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간토 <u>대학살사건</u> ”이란 1923 년 일본의 <u>간토(關東)</u> 지역에 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 의 군인·관헌 및 민간인에 의하여 <u>조선인들 6천여 명이</u> <u>학살된</u> 사건을 말한다.	1. ----- <u>대지진 조선인 희생</u> <u>사건</u> ----- <u>간토</u> ----- ----- ----- ----- <u>조선인들이 희생</u> <u>당한</u> -----.
2. “ <u>피해자</u> ”란 간토 <u>대학살사건</u> 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으로서 <u>제3조제2</u> <u>항제3호에</u> 따라 <u>피해자</u> 로 결	2. - <u>희생자</u> ----- <u>대지진 조</u> <u>선인 희생사건</u> ----- ----- <u>제3조제2항</u> <u>제3호에</u> 따라 <u>희생자</u> -----

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①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3. -----희생자-----
-----비속-----

-----.

제3조(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희생자-----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② -----
-----.

1.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진상규명-----
2.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3. 희생자-----

4.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에 관한 사항

5. (생략)

6. 피해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
에 관한 사항

7.·8.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국회의
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
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
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
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
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
명한다.

1.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활동
가 또는 간토 대학살사건 연

4. 희생자-----

5. (원안과 같음)

6. 희생자-----

7.·8. (원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5명

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
람 1명

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
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 나목에 따른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
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4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

구자 등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
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나 그밖에 사회적 신
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
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

총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

3년-----대지진 조선인

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생략)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

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
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
분보장)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
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해임 또는 해
촉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생략)

희생사건-----.

② (원안과 같음)

<삭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원안과
같음)

②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
분보장) ① · ② (원안과 같
음)

③ -----

-----국무총리가-----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원안 제
9조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간토 대학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 하였던 경우

② 간토 대학살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

③ -----제1항-----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위원장-----

-----.

제12조(의사의 공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생

제11조(의사의 공개) 위원회-----

-----.

-----위원회-----

-----.

<삭 제>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원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간토 대학살사건 관련 연구자,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활동가, 국제법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 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생략)

제17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

안과 같음)

② -----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
규명-----

-----희생자와
유족-----

-----.

③ (원안과 같음)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원안 제16조와 같음)

제14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희생자-----

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u>범위</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u>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8조(신청의 방식)</u> ① <u>제17조</u>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u>제19조(신청의 각하)</u> (생략) <u>제20조(진상규명 조사개시)</u>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u>제19조</u>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	----- -----. ② · ③ (원안과 같음) ④ ----- ----- -----<u>범위 및 접수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u>----- -----. <u><삭 제></u> <u>제15조(신청의 방식)</u> ① <u>제14조</u>----- ----- ----- -----. ----- 1. · 2.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u>제16조(신청의 각하)</u> (원안 <u>제19조</u>와 같음) <u>제17조(진상규명 조사개시)</u> ① -----<u>제16조</u>----- ----- ----- -----
---	--

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간토 대학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
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
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
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정
보의 조회, 관련 자료·물건
의 제출 요구

4.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유족은 제외한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

② (원안과 같음)

③ -----대지진 조선
인 희생사건-----

-----.

제18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
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
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물
건의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
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정
보의 조회, 관련 자료·물건
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
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
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의

또는 유해의 제출 요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간토 대학 살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장은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로부터 제1항제1호·제3호에 따라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
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
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
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
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
은 위원회가 해당 자료 및 물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

<u>라 수집한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관리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u>	
<u>제22조(결정 등) ①</u> 위원회는 <u>제17조</u>의 신청에 따라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간토 <u>대학살사건</u> 피해 여부 2. (생 략) 3. <u>피해자</u> 및 유족 ② · ③ (생 략)	<u>제19조(결정 등) ①</u> -----<u>제14조</u>----- ----- -----. 1. -----<u>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u>----- 2. (원안과 같음) 3. <u>희생자</u>----- ② · ③ (원안과 같음)
<u>제2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u> 위원회는 <u>제19조</u>에 따른 각하, <u>제20조</u>에 따른 조사개시, <u>제22조</u>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u>제17조</u>에 따른 신청인 및 <u>제21조</u>에 따른 조사대상자 ·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u>제20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u> -----<u>제16조</u>----- <u>제17조</u>-----<u>제19조</u>----- ----- -----<u>제14조</u>----- ---<u>제18조</u>----- -----. ② ~ ④ (원안과 같음)
<u>제24조(보고서의 작성) ①</u>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u>국무총리와 국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u>제21조(보고서의 작성) ①</u> ----- ----- -----<u>대통령</u> <u>과</u>-----.

다.

②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5조(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간토 대학살사건 관련 사료관 및 역사관 건립과 운영 및 온라인 아카이브 제작과 관련한 사업

3.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역사왜곡의 시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4.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

② -----

-----대통령과-----
-----.

③ (원안과 같음)

제22조(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

1. (원안과 같음)

2.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운영

3.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문화·학술 및 교육·연구 관련-----

4. 그 밖의 관련-----

단체 활동가들의 역사를 통한
평화교류 증진과 관련한 사업
제2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
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
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
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
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
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으
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지
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
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
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 감정
인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삭 제>

제23조(비밀 준수의 의무) -----
-----직원-----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생략)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
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
항제4호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을 거부한 자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원안 제28조와 같음)

제25조(벌칙) 제23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사무국의 설치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 -----위촉 등----- -----.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원안과 같음)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이란 1923년 일본의 간토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인·관헌 및 민간인에 의하여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에 관한 사항
7. 추도공간 및 역사관 구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5명

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 나목에 따른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의 연장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해임 또는 해촉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관련 연구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활동가, 국제법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 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관련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및 구성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접수처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접수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청의 방식) ① 제14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7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정보의 조회,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

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장은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로부터 제1항제1호·제3호에 따라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의 신청에 따라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희생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유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각하, 제17조에 따른 조사개시, 제19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제14조에 따른 신청인 및 제18조에 따른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지의 대상·방법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정부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도비 건립 및 추도시설 등 추도공간 조성 관련 사업

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관련 사료관 및 역사관 건립과 운

영

3.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문화·학술 및 교육·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제23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
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3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